

『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김 종 율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산동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. 9. 10.자로 읍(邑) 승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읍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산동면을 산동읍으로 승격 설치(안 제2조)
- 산동읍 관할구역(안 제3조)
- 읍 승격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(안 부칙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-4385(2020. 9. 10)호
「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(읍) 설치 승인」 완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○ 본 『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』은

- 산동면이 2020. 9. 10. 행정안전부로부터 읍(읍) 승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읍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21. 1. 1자로 읍 설치를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임.
- 4공단 확장단지와 5공단이 조성되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산동면은 도시와 농촌,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읍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음.

○ 검토 결과,

- 행정안전부의 읍 승격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동읍의 설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산동면 읍 승격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1항을 근거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- 산동면의 읍 승격에 따라 읍 기준의 행정기구 확대와 인력 증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